시정질문 및 답변순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 시	의원명	질 문 내 용	답 변 자	비 고
계	6명	9건		
2007. 12. 4. (화)	김봉수	1. 제천종합연수타운의 성공적 추진방안에 대하여?	시 장	①
	권건중	1. 우리시의 인구감소 대책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부 시 장	②
	박기석	1. 제천시 장애인 복지관련 정책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행정복지본부장	③
2007. 12. 5. (수)	조덕희	1. 제천32명산의 등산로 훼손 및 예방 대책에 대하여? 2. 한방엑스포를 대비한 우리시 생산 한약재로 한방차를 개발 브랜드 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안에 대하여?	부 시 장 부 시 장	①
	박성하	1. 한방생명과학관 BTL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2. 바이오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운영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한방산업팀장 생활환경팀장	②
	성명중	1. 가로·보안등 관리에 대하여? 2. 공공디자인 도시선포 및 사업시행에 대하여?	미래경영본부장 미래경영본부장	③

답 변 서

질문의원	조덕희 의원(산업건설위원회)
답 변 자	부시장 김재갑
제 목	제천 32명산의 등산로 훼손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① 시민 생명의 숲 보호를 위한 자연보호 운동실태는?
② 시민의 안전을 위한 등산학교 운영과 안전교육 실시 등 2005 ~ 2007년까지의 운영실적은?
③ 제천시 32명산의 각 등산로 길이는?
④ 제천시 관내 명산 중 2004년부터 ~ 2007년까지 등산로 보호 및 복구를 위하여 투입된 예산 및 사업별 내용은?
⑤ 용두산, 까치산, 동산 등 시민이 상시 이용하는 등산로의 훼손 예방 및 훼손 등산로의 향후 복구대책은?
⑥ 관내 명산 등산로 보호 및 수해예방 및 복구비 절감을 위하여 등산로가 유실되는 빗물 흐름길 갈라놓기 사업을 2008년부터 우기 전 매년 3~4회 시행 할 계획은?

답변내용

부시장 김재갑입니다.

평소 산림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 32명산의 등산로 훼손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등산로에 대한 현실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근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웰빙문화의 정착에 따라 시민들의 그린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건강효과를 올릴 수 있어 산행 인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 우리지역은 내륙 산악지역으로 산림이 제천시 전체면적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용두산을 비롯하여 청풍호 주변의 유명한 산과 아름다운 풍광이 잘 보존되어 있으나 무분별하고 과도한 산행으로 훼손상태가 심각하며 등산로의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유지,보수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신 시민 생명의 숲 보호를 위한 자연보전 운동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지역에 자연의 숲을 보호하기 위한 자생단체는 자연보호협회를 비롯하여 산림보호협회 등 약 3개 자생단체와 회원 200여명이 자연정화활동과 산불예방계도활동, 소나무 지키기 운동, 숲해설 활동을 주간 또는 계절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시민의 안전을 위한 등산학교 운영과 안전교육 실시 등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학교 운영은 제천시 산악연맹(회장 김성진)에서 등산시 안전한 산행과 사고 발생시 신속

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등산에 대한 이론과 암벽타기, 독도법 등을 산악연맹 자체적으로 년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9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세 번째 제천시 32명산의 각 등산로의 길이는 약 240.5km로써 등산로 길이와 소요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 명	산 위 치	시 점 ~ 종 점	거리(Km)	소요시간	비고
합계			240.5		
월악산(영봉)	한수면	덕주골휴게소~신륵사	8.5	4시간25분	국립공원
북바위산	한수면	물레방아휴게소~꼬부랑재	8.0	4시간5분	〃
용마산	한수면	송계리남문~송계리	4.5	2시간20분	〃
만수봉	한수면	만수교~하늘재	6.5	3시간20분	〃
하설산	덕산면	양주동마을~용하수	8.0	4시간10분	〃
메밀봉	덕산면	억수휴게소 원점회귀	6.5	3시간20분	〃
대미산	덕산면	용하수 원점회귀	16.0	8시간10분	〃
주론산	백운면	박달재~베론성지	8.0	3시간	
시랑산	백운면	박달재~모정리	7.0	2시간	
삼봉산	백운면	대호지~화당리	8.0	3시간	
용두산	송학면	수련원~용담사	4.0	1시간30분	
백운산	백운면	원덕동~차도리	12.0	4시간30분	
벼락바위봉	백운면	창도리~운학리,차도리	8.0	3시간	
구학산	봉양읍	운학~노목	8.0	3시간30분	
감악산	봉양읍	용두산~감악산	10.0	4시간	
송학산	송학면	포전리~입석	6.0	3시간	
무등산	송학면	골안고개~통불사	5.0	2시간30분	
천등산	백운면	원월리~다릿재	7.0	2시간30분	
작성산	금성면	무암사 원점회귀	7.0	3시간	
동산	금성면	무암사 원점회귀	8.0	3시간30분	
저승봉	청풍면	학현계곡 원점회귀	7.0	3시간30분	
신선봉	청풍면	학현리~상학현	5.0	2시간15분	
금수산	수산면	상천리~상학마을	8.0	4시간25분	
망덕봉	한수면	상천리 백운동~능강리	12.0	5시간	
가은산	수산면	옥순대교~상천리	6.5	3시간20분	
옥순봉	수산면	계란재~정상	1.0	45분	
등곡산	한수면	탄지리~빗댕이골	9.0	3시간	
비봉산	청풍면	연곡리~대류	5.0	2시간	
국사봉	금성면	금성면~공전리	11.0	4시간	
작은동산	청풍면	교리~학현리	4.5	2시간25분	
마당재산	금성면	포전리 마을 원점회귀	6.5	3시간25분	
봉황산	봉양읍	학산리~봉양리 송석정	9.0	4시간40분	

□ 네 번째 제천시 관내 명산 중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등산로 보호 및 복구를 위하여 투입된 예산 및 사업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 년도	산 명	시설물	집행액 (천원)
합계			154,408
2004	하소동 뒷산	목계단 88단, 윗몸일으키기 1개소	12,420
	용두산	이정표 2개소	
	묘향동산	평의자 1개소, 허리돌리기 1개소 로프형휀스 10경간	
2005	봉양 중앙아파트 뒷산	평의자 5개소, 허리돌리기 1개소	19,970
	옥녀봉	평의자 5개소, 허리돌리기 1개소	
	동중학교 뒷산	평의자 5개소, 허리돌리기 1개소	
	하소동 뒷산	평의자 6개소	
2006	작은동산	목계단 270단, 목교 1개소, 이정표 2개소 등산로 정비 910m	36,357
2007	용두산	평의자 2개소, 목계단 260단, 이정표 2개소	86,661
	비봉산	평의자 2개소, 안내판 4개소, 이정표 2개소	
	하소동 뒷산	평의자 9개소, 목계단 96단, 허리돌리기 1개소, 윗몸일으키기 1개소, 이정표 7개소, 안내판 정비 10개소	
	동중 뒷산	평의자 3개소, 목계단 26단	
	성산	목계단 33단, 이정표 4개소 등산로정비 1ha, 철제사다리 1개소	

□ 다섯 번째 용두산, 까치산, 동산 등 시민이 상시 이용하는 등산로의 훼손예방 및 훼손등산로의 향후 복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등산로 훼손예방에 대하여는 오랜 기간동안 단일 등산로를 사용을 하여 훼손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등산로의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2008년 검토하겠으며

○ 향후 복구대책에 대하여는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동안 산림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예산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하여 훼손된 등산로에 계단설치와 복토를 실시하는 등 훼손된 등산로를 복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섯 번째 관내 등산로 보호 및 수해예방 및 복구비 절감을 위하여 등산로가 유실되는 빗물 흐름길 갈라놓기 시행을 2008년부터 우기 전 매년 3~4회 시행할 계획에 대하여는** 산림관리팀에서 운영하는 산림보호강화요원을 활용하여 관내 등산로에 대하여 수시로 정비하여 모든 시민들이 산림을 누리고 이용하는 쾌적한 등산문화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 32명산의 등산로 훼손 및 예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서

질문의원명	조 덕 희 의원(산업건설위원회)
답 변 자	부시장 김 재 갑

질문내용

□ 한방엑스포를 대비한 우리시 생산 한약재로 한방 차를 개발 브랜드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내용

평소 제천시 의정 발전과 제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종섭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조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대비하여,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로 한방 차를 개발 브랜드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방안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시의 읍·면동별 한약초 재배면적 및 생산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약초 재배면적은 황기를 비롯하여 40여종 572ha에 이르며, 그동안 한약재의 가격 하락으로 면적이 감소하였으나 2006년부터 세명대학교와 협력하여 추진한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등 약초GAP 사업의 확대로 면적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읍면동별 약초 면적은 『별표1』을, 작물별 약초 재배 면적은『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2010한방엑스포를 대비하여 재배면적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국제기준에 의한 안전성, 유효성이 보장된 GAP 한약재 생산유통이 시급함을 감안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진흥사업을 통해 다양한 품종의 GAP한약재 생산유통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의 년간 약초생산량은 기상조건과 연작피해등 장애요인을 감안하여 추정할 때 1,100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량은『별표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7년 우리시 한약초 작물별 재배면적과 황정작목의 과잉 생산으로 가격하락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약초재배면적은 앞에서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572ha로 작물별로는 황기 199ha로 전국생산량의 30~40%를 점유하며, 율무 95ha, 황정 56ha, 인삼 56ha, 두충 22ha, 더덕 21ha 도라지 20ha, 오미자를 비롯한 기타품목이 100ha 정도 됩니다.

지난해와 비교 황기, 황정, 율무의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당귀는 재배 면적이 감소 되었습니다

황정의 재배면적의 증가 사유는 황정의 재배기간은 5~6년으로 2004년 황정 가격이 600g당 300원선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감소하였다가 2006년도 가격상승으로 면적이 2배이상 증가되었으며, 황정 가격이 급상승한 배경은 KBS TV 비타민 프로에 황정이 노화방지 피부미용에 좋다고 방송되면서 품귀 현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황정의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은 GAP재배를 통한 중국산과의 품질 차별화로 둥굴레차등 가공식품, 특화상품 개발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남부면의 황정과 당귀, 황기등의 약초를 혼합 냉동건조 한방 티백차를 연구개발하여 제천의 한방대표브랜드로 녹차를 능가하는 한방차를 전국에 보급할 계획과 이에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 한약가공업체들이 이미 약초를 이용한 한방 티백차를 개발 판매하고 있어, 이것을 전국 최고의 브랜드화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약초를 활용한 품격있는 전통차의 개발은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약초의 소비 측면과 우수농산물품질인증 약초를 사용한다는 측면으로 이는 어느 지역보다도 제천시가 앞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한방식품미니클러스터 회원업체중 박달재식품에서 오가피차등 한방차 4종, 의림지약초에서 한방차세트, 월악야생차영농조합법인에서 자연야생 뽕잎차, 감잎차, 쑥차등을 제조하여 판매중에 있으며, 전통의약산업센터에서 티백 둥굴레차를 연구개발후 기술이전 기업을 물색중에 있으나 마땅한 기업이 없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옥수수차는 옥수수수염+황정을 가미한 음료로서 인기있는 제품으로 우리시에서도 센터내에 금년도 가공시설을 완비 황기+황정을 활용한 제품을 내년도부터 연구 개발하여 한방 엑스포전까지는 제품이 산업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신활력사업을 통한 한방제품 신규 및 기존제품 업그레이드 연구개발사업과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산학공동연구개발 컨소시엄사업, 지역특성화사업(RIS), 충북 테크노파크(TP) 연구개발사업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한방식품, 화장품등 제품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차 종류, 음료등 일반식품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품에 대한 마케팅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별, 업체별로 우수한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대부분 오래가지 못하고 소멸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한방차를 전국의 어느 지역에서나 판매될수 있도록 대기업과의 연계, 지역브랜드로써의 차별성, 대대적인 홍보마케팅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며

제천에서 생산되는 황기, 황정(둥굴레), 당귀등 원재료에 대한 차별화와 특히 2010국제한방엑스포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마케팅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2010년 한방엑스포 개최로 약초재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및 약초가공업, 유통업의 발전과 소득향상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약초생산 유통의 문제점은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없이 시중에 유통됨으로써 중금속, 잔류농약의 검출 언론보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소비가 줄고 있는 것이 문제로 이에 대한 대안은 안전성, 유효성이 보장되는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를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2006년도부터 황기GAP 품질인증사업을 통해 시중가 보다 20~30% 비싼 가격에 한약제조, 유통업체에 일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초GAP 사업은 재배단계부터 토양 중금속검사, 잔류농약 검사등 생산이력관리와 약초APC 시설에서 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세척, 건조, 가공하여 우수농산물품질인증을 통해 유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국 약초재배 농가는 GAP 생산이력관리를 하여 우수한 품질로 제조업체에 직거래를 통해 가격을 보장받고, 제조업체는 원가를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저가에 판매하는 유통체계 확립과 부가가치를 높여 식품, 화장품, 의약품을 제조판매 하는 것이 상생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우수한약재유통저장시설의 건립(BTL사업)을 통하여 한약재의 가공·제조⇒저장⇒유통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한 한약재를 공급하고

생산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한 직거래로 농가의 판로를 보장하고 중간유통 마진을 줄여 한방병원, 한의원, 가공제조업체, 소비자층에 판매함으로써 수입산과의 가격 경쟁력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방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지역은 물론이고 국·내외 자랑 할 만한 최고의 브랜드 제품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를 충분히 인식하고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로 고부가가치를 갖춘 특색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한약재 생산농가, 지역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별표1>

읍면동별 약초재배면적 및 생산량('04 ~'07)

년차별	읍면동별	농가수	재배면적	생산량(톤)	주품목
2004	금성	45	53.0	106	뚱딴지,
	청풍	21	18.0	36	생강
	수산	223	55.0	110	황정, 인삼, 두충
	덕산	235	63.0	126	황정, 황기, 당귀,더덕
	한수	23	10.0	20	고본,
	백운	105	53.0	106	당귀, 천궁, 황기, 오미자
	봉양	85	45.0	90	황기, 오가피,
	송학	95	70.0	140	황기,
	시내동	135	75.0	150	황기, 오가피,
계		967	442.0	884	
년차별	읍면동별	농가수	재배면적	생산량	주품목
2005	금성	40	35.0	70	뚱딴지
	청풍	28	25.0	50	생강
	수산	223	62.0	124	황정, 인삼, 두충
	덕산	215	75.0	150	황정, 당귀, 더덕
	한수	5	3.0	6	더덕
	백운	101	53.0	106	황기, 오미자, 천궁, 당귀
	봉양	95	55.0	110	오미자, 황기, 오가피
	송학	85	78.0	156	황기
	시내동	136	75.0	150	황기, 인진쑥,
계		928	461	922	
년차별	읍면동별	농가수	재배면적	생산량	주품목
2006	금성	36	35.0	70	황기, 오미자, 울무
	청풍	28	25.0	50	생강, 두충
	수산	189	62.0	124	인삼, 황정, 두충, 울무, 작약
	덕산	165	75.0	150	당귀, 황정, 황기, 더덕, 만삼
	한수	5	3.0	6	더덕
	백운	92	62.0	124	오미자, 황기, 결명자, 천궁
	봉양	83	60.0	120	오미자, 황기, 산약, 오가피,
	송학	73	78.0	156	황기, 울무
	시내동	136	82.0	164	황기, 울무, 오가피,
		807	482.0	964	
년차별	읍면동별	농가수	재배면적	생산량	주품목
2007	금성	55	56.0	112	황기, 오미자, 장뇌산삼, 울무
	청풍	16	25.0	50	황기, 두충, 두릅
	수산	215	98.0	200	황기, 인삼, 두충, 당귀, 황정,작약
	덕산	165	89.0	180	당귀, 황기, 황정,
	한수	8	3.0	6	황기
	백운	89	65.0	130	오미자, 천궁, 결명자,
	봉양	87	83.0	166	오미자, 자초, 오가피, 황기, 장뇌산삼
	송학	75	78.0	156	황기, 울무
	시내동	136	75.0	150	황기, 울무, 인진쑥,
계		846	572.0	1,150	

<별표2>

작물별 약초재배면적(2004 ~ 2007)

약초명	2,007		2,006		2,005		2,004	
	농가수	재배면적 (ha)	농가수	재배면적 (ha)	농가수	재배면적 (ha)	농가수	재배면적 (ha)
감초	3	2.0	1	0.3				
강활	1	0.5	1	0.2			6	2.2
결명자	2	0.5	1	0.3				
고본			1	0.2	1	0.2	1	0.2
골담초	-	-						
구기자	-	-						
구절초	1	0.3						
금은화(인동)	-	-						
단삼	-	-	1	0.1				
당귀	15	6.6	29	11.8	31	11.5	32	11.2
대추	1	1.2	1	0.3				
대황	-	-						
더덕(양유)	100	21.6	80	26.8	152	25.3	122	30.9
도라지(길경)	58	20.5	53	18.7	49	18.2	49	10.1
독활(땅두릅)	24	1.5	8	1.5	22	6.3	13	6.2
돼지감자(뚱단지)	-	-	1	1.0				
두릅	15	3.8						
두충	22	22.0	85	40.7	36	23.2	62	23.2
마	3	1.0	5	0.5				
마자인(대마)	1	2.0	1	1.0			2	1.3
만삼	4	1.0	1	0.2	1	0.1		
맥문동	-	-						
목단	4	1.0	7	1.5	14	1.3	1	0.6
목통(으름덩굴)	-	-						
민들레(포공영)	-	-						
반하	-	-						
방풍	1	0.5	2	1.1	9	1.5	8	1.3
백지(구릿대)	-	-						
백출	-	-	1	0.1	1	0.1	1	0.1
복령	-	-						
복분자	1	0.1			4	3.4		
봉삼(백선)	-	-						
산더덕	-	-						
산도라지	-	-						
산뽕나무(상백피)								
산사	1	1.0	1	0.3				
산수유	1	1.5	1	1.5			2	0.1
산오미자								
산 초	1	1.0					2	0.4
속 단	1	0.1	1	0.3				
삼백초	1	0.1						
상황버섯	2	0.2	2	0.2	2	0.2		

생강	10	2.0	7	2.0				
세신	-	-						
시호	1	0.1			10	1.8	2	0.1
어성초	1	0.1						
엉겅퀴(비렴)	-	-						
영지버섯	-	-			1	0.3		
오가피	30	15.0	35	26.0	35	33.4	57	26.2
오미자	62	18.5	42	12.5	33	8.2	16	3.8
용담	-	-						
우슬(쇠무릎)	-	-						
울금	-	-						
율무(의이인)	102	95.3	67	35.0	50	27.2	70	32.3
은행								
음양곽(삼지구엽초)	-	-						
익모초	-	-	1	1.4				
인삼	28	56.3	30	62.5	71	55.6	68	77.1
인진쑥	4	2.0	2	2.2	13	9.4	15	4.5
작약	10	5.0	13	3.7	22	6.0	16	4.2
잔대(사삼)	1	0.2	1	0.2	4	1.5	3	0.4
장뇌산삼	15	14.0	10	10.5	20	7.5	3	5.3
지모	1	0.1						
지초(자초)	15	6.0	11	2.7	9	1.5	12	2.9
지황	-	-	1	0.1			1	0.1
차전자(질경이)	-	-						
창이자(도꼬마리)	-	-						
천궁	11	5.6	7	1.4	6	0.9	19	8.1
천마	2	0.3	1	0.2	1	0.1		
치자	-	-						
패모	-	-						
피마자(아주까리)	1	0.1						
하수오	1	0.1			1	0.3		
해바라기	-	-						
홍화	9	1.5	6	2.2	19	6.0	13	1.4
황금	1	0.1					2	0.3
황기	207	198.5	223	187.0	256	150.0	277	155.8
황정	70	55.5	68	24.4	55	59.9	92	32.1
기타	1	5.5						
계	846	571.8	807	482.1	928	460.9	967	442.4

답 변 서

질 문 의 원	박 성 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답 변 자	한방산업팀장 이 주 식
제 목	한방생명과학관 BTL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요지

○ 한방생명과학관 BTL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내용

한방산업팀장 이주식입니다.

먼저 우리시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한방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박성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방생명과학관 BTL사업의 진행사항 전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관은 2010년 제천국제한방 바이오엑스포의 메인시설로 엑스포 기간 중에는 생명과학에 대한 전시·체험·홍보시설로 운영되고 엑스포 이후에는 제천시민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됨은 물론 전국민의 한방건강테마 관광체험시설로 한방의 과학화, 세계화를 선도하는 국내 유일의 한방전문과학관으로 제천이 전통의학의 메카라는 위상을 선점함으로서 한방도시의 브랜드를 표방하는 전국 30여개 지자체중 최고의 자리를 확보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한방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하이테크밸리의 한방산업단지에 한방바이오기업유치를 유도하고 기업체에서 제조생산 된 한방관련 식품, 화장품, 의약품의 홍보관으로서 지역을 한방관광 상품화 하는 인프라 시설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한방생명과학관 BTL사업의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정부(과학기술부)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07년 1월 17일 정부지원사업(한도액 227억원) 으로 기획예산처에서 확정 고시됨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07년 4월 30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기획예산처 공고 제 2007-25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타당성 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정부투자기관인 산업연구원에 발주하여 '07년 8월 27일 사업타당성 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07년 8월 29일 완료된 용역을 기획예산처 산하기관인 KDI 공공투자 관리센터에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자문을 의뢰하여 '07년 10월 18일 KDI 공공투자 관리센터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07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KDI 공공투자 관리센터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07년 11월 09일 충청북도,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의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07년 11월 14일 관련 상급기관의 결과를 통보받아 '07년 11월 15일 관보 및 3개 일간지(중부매일, 건설일보, 매일경제) 그리고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기획예산처 인터넷 BTL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습니다.

'07년 11월 19일 한방생명과학관 임대형 민자사업 현장설명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설명에 25개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참여회사 업종별로 나누어보면 건설사 11사, 전시물설계 및 시공사 6업체, 건축설계사 2개사, 시설운영사 1개사, PM업체 5개사가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확보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면

과학관 건립 BTL사업은 정율제 지원방식에 의거 국비 50% 지원 지방비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07년 1월 17일 정부지원사업(한도액 227억원) 으로 확정 고시됨으로서 국비 50%인 113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비 부담분 113억 5천만원을 제천시에서 모두 부담하기는 어려워 도비 지원요청을 한바 충청북도에서는 25%인 56억 75백만원을 20년 동안 상환하는 BTL방식의 지원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이 불가하나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엑스포의 메인시설인 만큼 재정사업비로 '08년도 20억원 '09년도 20억원 '10년도 17억원으로 총 57억원을 재정 지원하는 방안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는 10월 제천시의원간담회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07년 10월 12일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한방생명과학관 BTL 사업 시비의무부담 동의안』을 제출하여 '07년 10월 25일 제1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지방비중 도비 57억원 재정지원분을 제외한 85억원(상환액 148억원)에 대한 시비의무부담을 동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2.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을 2010년 제천국제한방 바이오엑스포에 맞추어 준공하기 위하여 일정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07년 12월 3일까지 민간투자사업자의 PQ서류를 접수하여 12월 10일까지 평가결과를 통지하겠으며 '08년 2월 28일까지 민간투자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및 가격제안서를 접수받아 3월 17일까지 평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08년 3월 19일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 25일까지 협상을 마무리 '08년 6월 30일 실시협약(안)을 마련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실시협약 체결 전 사전검토 의뢰할 계획입니다.

'08년 7월중에 KDI 검토결과를 보완하여 8월 중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공기내 준공을 위하여 페스트 트랙이라는 설계·시공 동시발주 기법을 사용하여 '08년 9월중에는 공사에 착수하고 10년 6월말까지는 준공하겠으며 약 2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9월 엑스포 행사시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편입토지의 보상, 민간투자사업자의 선정, 사업장주변의 각종여건 등 많은 변수가 있으나 목표한 일정에 맞추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 다음은 한방생명과학관 엑스포 이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과학관 시설의 차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첨단 U시스템을 도입하여 첨단영상, 쌍방향 체험시설, 거대 인체 조형물 등에 유비쿼터스 기법을 도입하여 인체의 내부세계를 알도록 전시물을 꾸미겠습니다.

단순 관람하는 시설이 아닌 한방건강을 체험하고 건강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관리 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한방관련 건강정보를 지속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장에 설치되었던 생명과학관련 전시물을 재활용하겠으며 과기부, 산자부, 복지부, 한국과학재단 등 정부사업에 의한 특별, 기획사업을 적극 발굴 유치하겠습니다.

[2] 과학관 운영비 절감대책을 지속 강구하겠습니다.

BTL사업 경쟁 유도로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인 제안을 많이 발굴토록 하여 품질우위, 가격우위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운영비 절감을 위한 부속 · 부대사업을 제안토록 유도하여 운영비 절감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과학관 운영방법을 민간위탁 방식을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 차별화를 통한 관람객 지속 유인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체험프로그램, 학술연구행사, 특별, 기획전시 과학축전 유치 건강축제 및 엑스포 개최, 생명과학 네트워크 구축을 하겠습니다.

3 홍보 마케팅의 차별화를 시도하겠습니다.

건강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으며 과학관 홈페이지 구축, T.V, 라디오,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교통수단광고물 등 기존의 홍보매체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매체의 개발을 통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천관광열차, 관광버스 , 지역축제, 영농체험, 재래시장 쇼핑 등 다양한 테마와 연계된 관람객 유치방안을 마련하고, 산업단지방문객, 베론성지 순례자, 일반관광객, 미취학어린이, 학생, 주부, 노인, 가족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이벤트를 마련하여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4 과학관 주변 관람객 유인 인프라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과학관 앞 엑스포유통단지 부지에 임시시장(판매장)을 조성하여 엑스포를 개최하고 행사 이후 공공시설 용지로서 산업단지 내 기업지원을 위한 테크노 파크, 한약재 종자 연구소 등 R&D 시설유치와 지역한방 상품 및 바이오벨리 생산제품 전시판매장을 개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는 매년 개최되는 한방건강축제를 이곳에서 개최하고 4년 주기로 적은 예산을 투입 한방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여 국제적인 한방특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서

질 문 의 원	박 성 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답 변 자	생활환경팀장 김 동 석
제 목	바이오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운영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1.폐기물매립장 건설과 관련 우리시를 제외한 관련기관은 용량증가에 찬성하였는데 그 이유와 근거는?

2.폐기물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시민,의회,사회단체 반대가 극심하였고 환경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우리시와 충청북도, 원주청의 대책은?

3.제천시는 2003년부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불가 입장을 고수하였는데 당초계획 보다 10배 정도 용량이 증가되어 허가된 이유는?

4.당초 및 변경 후 매립장의 허가면적, 매립량, 매립고 현황과 2007년도 10월말 기준 매립량, 매립고와 잔여 매립량 현황?

5.허가시 침출수에 대한 대책과 현재 매립장내 침출수량은 얼마이며, 지금까지 위탁처리량과 비용 및 현재 잔존량에 대한 위탁처리시 비용은?

6.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횟수와 시기 및 에어돔 설치목적과 에어돔 붕괴원인은?

7.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과 주무부서인 원주지방환경청의 대책 그리고 업체의 대책은?

답변내용

1. 폐기물매립장 설치 관련 우리시를 제외한 관련기관은 매립장 용량을 늘린 이유와 근거는?

► 매립용량 변경에 따른 추진 경위로는

• 충북도 개발계획 변경 승인 : 2001. 10.16 / 용량 63,000㎥

- 매립장 부지 매각 : 2002.06.24 / 면적 27,676㎡
-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제출 : 2003.07.15 원주환경청/용량 499,369㎥
- 제천시 부적합 의견 제출 : 2003.08.08(제천시→원주환경청)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취하 : 2003.08.18 (주)대원인바이로텍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재접수: 2003.08.22 원주환경청/용량 499,369㎥
- 제천시 부적합 의견 제출 : 2003.09.08 (제천시→원주환경청)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적정통보: 2003.10.07(원주환경청→사업자)**
  - 조건 : 사업계획적정통보내용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이행
- 개발 계획 변경 협의 : 2003.12.09 (충북도→제천시)
  - 용량 : 63,000㎡→93,090㎡ / 사유 : 입주업체변경, 폐기물량증가
- 계획변경협의 동의의견 제출: 2004.02.06(제천시→충북도)
- 협의내용변경계획서 제출 : 2004.02.26(충북도→원주환경청)
- 협의내용변경계획서 자료보완요구 : 2004.03.23(원주환경청→충북도)
  - 보완사항 ┌ 폐기물발생량이 당초와 많은 차이가 있음('97,'01년 원단위)
    └ 단순사업장인구예측 불합리, 적절한 원단위 적용 재예측 제시
- 변경계획서 검토 불가 통보 : 2004.06.09(원주환경청→충북도)
  - 사유 ┌ 자료보완 미이행,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 미흡
    └ 개발계획변경 용량(93,090㎡)과 사업계획 용량(499,369㎥) 불일치
- 협의내용 변경계획서 자료보완요구 : 2004.06.30(충북도→토지개발공사)
  - 보완사항 : 매립용량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제출 촉구
-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협의변경서류 반려 : 2004.06.30(원주환경청→충북도)
  -사유 : 환경영향저감방안수립등의 자료보완요청 미제출로 검토 불가
- 개발계획변경요구 : 매립용량 351,852㎡(토기개발공사→충북도)
-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의견 주문 : 2004.08.18(충북도→제천시)
-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의견 제출 : 2004.09.10(제천시→충북도)**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 2004.09.10(08:40, 부시장실)-매립용량 심의

-의견 : 금번 충북도 재협의안 351,852㎥은 불가하며, 기 변경 협의한(2004.02.06) 처리용량 93,090㎥로 계획변경이 적정함

▶ 상기 사항과 같이 우리시에서는 일관되게 매립용량 93,090㎥를 주장하였으나 개발계획승인부서인 충북도와 폐기물처리업 허가부서인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사업자의 신청 처리용량 499,369㎥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매립장의 처리용량을 173,580㎥로 허가처리가 되었으며,

▶ 당초 계획 용량보다 늘어나게 된 원인과 이유로는 폐기물발생원단위 적용에 있어 '97년 발생원단위와 2001년 발생원단위의 적용에 따른 용량증가와 사업자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신청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2. 폐기물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시민, 의회, 사회단체 반대가 극심하였고 환경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우리시와 충청북도 원주청의 대책은?

▶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에 의무사항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환경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매립장의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하였으나 우리시가 주장한 처리 용량 93,090㎥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 최종적으로 개발계획승인부서인 충북도와 폐기물처리업 허가부서인 원주지방환경청에 의하여 현재 처리용량 173,580㎥ 허가처리되었음

► 이는 산업단지개발계획시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개발계획승인시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18조 규정하고 있는바 제출의견을 계획에 반영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강제규정이 없는 실정임

► 따라서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충북도에서 우리시 의견(93,090㎥)과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업자의 사업계획적정통보내용(499,369㎥) 등을 종합하여 처리용량을 173,580㎥ 결정하였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충북도와 원주지방환경청의 대책은 별도로 제시 되거나 통보된 바는 없음.

【관련법률】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 관한법률 제5조 규정
  → 산업단지조성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 본 조항은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설치 의무조항
-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
  → ①항 1호 :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톤이상 또는 조성면적 50만㎥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 설치하고자 하는자"
- 폐기물관리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 규정
  → ⑥항의 규정에 "영업구역의 제한은 생활폐기물에 한한다"
  → 지정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은 영업구역 제한규정 無

3. 제천시는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불가 입장을 고수하였는데 우리시의 입장과 관계없이 당초계획보다 10배 정도 용량이 증가되어 허가된 결정적인 이유?

► 우리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라 폐기물매립장 설치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다만 환경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규모를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우리시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으며

► 처리용량이 증가된 직접적인 원인은 폐기물발생량 산출기초인 발생원단위의 적용에 있어 사업인가('97.10.11)당시와 준공시점(2004.12)의 개발계획승인 시점의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와 사업자의 사업계획신청에서 증가 원인을 찾을 수 있음.

4. 당초 및 변경 후 매립장의 허가면적, 매립량, 매립고 현황과 2007년도 10월말 기준매립량, 매립고와 잔여 매립량 현황?

□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현황

부지면적(㎡)	27,676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매립용적(㎥)	63,000	499,369	93,090	351,852	173,580
매립고(m)	8 (지상1,지하7)	-	15 (지상5,지하10)	25 (지하25)	20 (지하20)
침출수처리	처리후 하수처리장연계처리	-	-	무방류 위탁처리	무방류 위탁처리

► 2007년도 10월말 기준 매립장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매립량 97,156㎥, 매립고 11m, 잔여매립량 76,424㎥임

5. 허가시 침출수에 대한 대책과 현재 매립장내 침출수량은 얼마이며, 지금까지 위탁처리한 침출수량과 비용 현황 및 현재 잔존하는 침출수의 위탁처리비용은?

► 당초 사업계획신청 및 허가시 돔시설을 계획하고 설치함으로 폐기물자체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침출수는 무방류시스템으로 전량 위탁처리로 허가되었고, 지금까지 침출수처리현황으로는 2006년도 위탁처리량 5,620톤, 처리비용 527백만원, 금년도 5,093톤 처리비용 5482백만원으로 평균 톤당 처리비용은 94,000원 정도이며,

► 현재 잔존하는 침출수량은 10,000톤으로 추정하고 있고, 추정치에 대한 처리비용은 940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잔존 침출수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어 단시일내 처리를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자체처리시설을 설치 처리하는 변경허가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후 자체처리후 처리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할 계획임.

6. 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횟수와 시기 및 에어돔 설치목적과 에어돔 붕괴원인은?

► 폐기물매립장 설계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업체측에 관련자료를 요구하였으나 2003년 10월 사업계획서적정통보 이후 근속한 직원이 없어 업무 인수·인계가 미숙하여 정확한 설계 변경 횟수와 시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에어돔 설치 목적과 붕괴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목적으로는 비산먼지, 악취 등의 오염물질 확산방지와 우수 유입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량 감소와 시각적 혐오감 완화 등 환경오염저감측면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에어돔 붕괴원인은 2006년 7월 15~16일 집중호우(당시 강우량:300mm)로 에어돔 측면 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다량의 토사가 에어돔 측면으로 순식간 밀려 내려와 에어돔이 붕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과 주무부서인 원주지방환경청의 대책 그리고 업체의 대책은?

►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업체(주.대원인바이로텍)의 대책으로는 먼저 악취 저감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내 침출수 처리에 관건을 두고 현재 침출수 1차 처리시설 조성 후 환경사업소와 연계처리를 조기에 마무리 하기 위해 중점을 두고 현재는 침출수처리시설을 시운전 중에 있으며, 향후 침출수 처리 후 일일 및 중간복토를 철저히 하고,

►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탈취제 살포를 강화하였고, 에어돔 입구와 에어돔 내부에 활성탄 흡착 시설을 설치(3EA)하여 악취 흡착시설을 갖추었고, 더불어 게이트를 통한 에어돔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게이트 내부에 송풍기를 설치하는 등 악취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주민피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각오입니다.

► 다음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관리부서로서 업체 지도점검 및 관리에 소홀함 없이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민원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난 악취 민원발생시 우리시와 합동으로 야간, 새벽시간대에 악취확인을 위한 합동점검을 수차례 실시하는데 업무에 열의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세부적인 대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여 우리시 지역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우려 나아갈 것입니다.

► 끝으로 우리시에서는 먼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생활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악취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여겨지는 침출수처리를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하고 향후 원주지방환경청과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하여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설치는 물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 또한 업체지도점검은 물론 관리에 있어 열린행정으로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업체운영을 상시 감시하고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시 공동으로 함께 시설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만들어 나아가는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박성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이오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운영실태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타 기관인 충북도나 원주지방환경청이 관련된 사항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향후 사업장관리에 있어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시민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당면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서

질 문 의 원	박 성 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답 변 자	환경사업소장 박 대 수
제 목	바이오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운영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 **침출수를 최종적으로 환경사업소를 통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

가. 침출수를 처리하면 냄새까지 정화가 가능한지, 생물학적 기준치는 얼마인지?

나. 침출수 처리시 처리비용은 ?

답변내용

□ 환경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 **먼저, 바이오밸리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된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검토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 폐기물 처리업체의 악취로 인하여 우리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바이오밸리 입주기업 및 향후 기업유치에 어려움과 장애가 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수많은 민원과 악취로 인한 고통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환경사업소에서 연계처리를 검토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침출수를 최종적으로 환경사업소를 통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법적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9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2호 나목 2)의 마)」 규정에 의하면 「침출수를 별표11 제2호나목 2)의 가)에서 규정하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라는 조항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이 위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해당 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침출수를 그 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규정에 근거를 두었으며, - 붙임1, 2, 3

○ 그 외에 환경관련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연계처리계획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 바, **검토결과에서 연계처리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주)대원인바이로텍에 폐기물최종처리업 변경허가를 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 5170, 2007. 10. 23)을 환경사업소로 통보받은 바**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별표11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과 관련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으로서 우리시의 (주)대원인바이로텍이 소재한 왕암동은 환경부 고시 제2004-208호(2005. 1. 6)에 의거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에서 "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4

○ 위의 규정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체의 침출수(원수)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성분검사를 의뢰하여 분석결과 **「매립시설 침출수의 패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 항목은 없었습니다.** - 붙임5

○ 다만, 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원주지방환경청의 변경허가조건과 법규이행사항인 별표11제2호나목 2)의 가)에서 규정한 **"가"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자체 처리하여 1차 처리된 침출수를 환경사업소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이에 대한 업체의 이행여부는 향후 시의 관련부서와 함께 환경사업소에서도 철저하게 지도·점검토록 할 계획입니다.

□ **두번째. 침출수를 처리하면 냄새까지 정화가 가능한지? 생물학적 기준치는 얼마인지?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별표11「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의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업체의 1차 처리방식은 보편적으로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약품에 의한 응집·침전 후 활성탄여과기를 거치는 방식**으로 침출수 냄새 저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 또한, 환경사업소의 하수와 연계처리 시에는 시간당 연계유입량이 유입하수량의 약 1.5%로 희석에 의한 냄새 저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생물학적 기준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매립시설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인 BOD 50㎎/ℓ, COD 100㎎/ℓ, SS 50㎎/ℓ이며, 그 외의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은 25개 항목**으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 침출수 처리시 처리비용은?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처리비용은 하수도법과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1조(사용료)제2항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가장 높은 요율인 영업용으로 적용하면, 예를 들어 침출수 10,000톤이 유입되어 처리될 경우 7,725천원이 되겠습니다. - 붙임6

○ 처리비용에 있어서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자체적으로 위탁처리 하였을 때와 환경사업소에 연계 처리시 부과되는 하수도사용료와는 많은 차액이 발생되므로 이는 곧 처리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을 세밀히 검토하고 관련 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하였으나, 그 결과는 해당업체가 1차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비를 기히 투자하고 운영유지 관리비를 들여서 법적기준인 "가"지역 수질기준 이하로 적법처리를 하여 연계 유입시키기 때문에 차액에 해당하는 처리비는 받을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붙임자료 1.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9 - 1부
2. 폐기물관리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1 - 1부
3. 하수도법 제2조 - 1부
4. 환경부 고시 제2004-208호(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 1부
5.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침출수 검사성적서 - 1부
6.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1조 별표1 - 1부. 끝.

[붙임 1]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별표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

2. 최종처리시설의 경우

나. 매립시설의 개별기준

2) 관리형 매립시설

마) 침출수를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가)에서 규정하는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침출수 처리시설 배출구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한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해당 시설에 옮겨 처리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또는 가까운 이웃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이 위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해당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침출수를 그 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모아 소각하는 등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발전·연료화처리시설 등의 활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붙임 2]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관리기준 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나. 최종처리시설의 경우

1) 차단형 매립시설

가) 매립시설의 측대벽은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매립시설 내부로 빗물이나 지하수가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낼 때에는 밀폐시켜야 한다.

라) 폐기물이 매립시설의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관리형 매립시설

가)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다음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산소요구량(㎎/L)			부유물질량 (㎎/L)
		과망간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1일 침출수 배출량 2,000㎥ 이상	1일 침출수 배출량 2,000㎥ 미만		
청정지역	30	50	50	400(90%)	30
가지역	50	80	100	600(85%)	50
나지역	70	100	150	800(80%)	70

비고

1.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배출허용기준은 2001년 6월 30일까지는 과망간산칼륨법에 따른 경우와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2001년 7월 1일부터는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2.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 ) 안의 수치는 처리효율을 표시한 것이며, 침출수 원수(原水)의 화학적산소요구량이 4,000㎎/L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 안에 표기된 처리효율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의 구분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구분에 따른다.

○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항목 / 지역	수소이온농도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페놀류 함유량 (mg/L)	시안 함유량 (mg/L)	크롬 함유량 (mg/L)	용해성철 함유량 (mg/L)	아연 함유량 (mg/L)	구리 함유량 (mg/L)	카드뮴 함유량 (mg/L)	수은 함유량 (mg/L)	유기인 함유량 (mg/L)
		광유류 (mg/L)	동식물유지류 (mg/L)									
청정지역	5.8 ~ 8.0	1 이하	5 이하	1 이하	0.2 이하	0.5 이하	2 이하	1 이하	0.5 이하	0.02 이하	불검출	0.2 이하
가지역	5.8 ~ 8.0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 이하	1 이하
나지역	5.8 ~ 8.0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이하	1 이하

비소 함유량 (mg/L)	납 함유량 (mg/L)	6가크롬 함유량 (mg/L)	용해성망간 함유량 (mg/L)	불소 함유량 (mg/L)	PCB 함유량 (mg/L)	대장균군수 (군수/mL)	색도 (도)	암모니아성질소 (mg/L)	무기성질소 (mg/L)	총인 (mg/L)	트리클로로에틸렌 (mg/L)	테트라클로로에틸렌 (mg/L)
0.1이하	0.2 이하	0.1 이하	2 이하	3 이하	불검출	100 이하	200 이하	50 이하 (95%)	150 이하 (85%)	4 이하	0.06 이하	0.02 이하
0.5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5 이하	3,000 이하	300 이하	100 이하 (90%)	200 이하 (80%)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0.5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5 이하	3,000 이하	300 이하	100 이하 (90%)	300 이하 (70%)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비 고

1. 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의 구분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구분에 따른다.
2. 무기성질소는 암모니아성질소 · 아질산성질소 · 질산성질소의 합으로 한다.
3. 질소처리시설의 반응조 출구의 수온이 섭씨 12도 미만인 경우에는 암모니아성질소와 무기성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암모니아성질소와 무기성질소의 ( )의 수치는 처리원수에 대한 처리효율을 표시한 것이며, 침출원수의 암모니아성질소 및 무기성질소의 농도가 1리터당 1,000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 ) 안에 표기된 처리효율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나) 침출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가)에서 규정하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보내야 한다.

다) 매립시설 주변의 지하수 검사정 및 빗물·지하수배제시설의 수질검사 또는 해수수질검사는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시작 신고일 2개월 전부터 사용시작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월 1회 이상, 사용시작 신고일 후부터는 분기 1회 이상 각각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항목은 지하수의 경우에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항목 및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성질소 항목을 측정하고, 해수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해역)기준항목을 적용하며, 측정 결과가 폐기물의 매립으로 사용 전보다 사용 중의 오염도가 높다고 인정되면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연직차수벽설치 및 오염된 지하수 이송처리 등)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 침출수 집배수시설은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토사의 제거나 그에 알맞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차수시설 상부에 모여 있는 침출수의 수위는 시설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매립중인 시설의 경우 5미터 이하, 매립이 끝난 시설은 2미터 이하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매립시설의 축대벽 및 둑은 폐기물과 침출수가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매립시설 측면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보호하고 침출수를 원활하게 배제하기 위하여 토목합성수지 상부의 지오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위에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자루에 모래, 폐주물사 또는 폐사를 채워 3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쌓거나(이 경우 자루의 내부에는 날카로운 물질이 혼합되어서는 아니 된다) 폐타이어에 모래·폐주물사 또는 폐사 등을 채워 쌓은 후 폐기물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으로 매립시설의 측면에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3]

하 수 도 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최근개정일자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거"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거"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
8. "분류식하수관거"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중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붙임 4]

환경부고시 제2004 - 208호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환경부고시 제1999-20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5. 1. 6. 환 경 부 장 관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2006. 12. 31까지 적용되는 지역 현황]

	행정구역	청정지역	가 지역	나 지역
충청북도	청 주 시	-	영운·금천·용암·산남·미평·분평·수곡·신촌·방서·동막동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충 주 시	종민·목벌동, 주덕읍, 상모·동량·살미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제 천 시	고명·두학동, 청풍·수산·덕산·한수·백운·금성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괴 산 군	연풍·칠성·청천·불정·감물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음 성 군	-	전 역	-

[붙임 5]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수신자 제천시환경사업소장

(경유)

제목 제천시 바이오밸리 침출수 성분검사 결과 알림

제천시환경사업소-14480(2007.10.11.)호로 검사 의뢰한 침출수 수질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단위:mg/L)

검사물명 / 검사항목	매립장내	저류조	검사물명 / 검사항목	매립장내	저류조
pH	7.2	7.2	Zn	0.825	0.707
BOD	330.0	123.0	Mn	0.912	0.371
COD	601.5	205.5	Cr	0.255	0.093
SS	92.0	49.0	Cr^{6+}	0.058	0.020
NH_3-N	158.000	20.500	Hg	불검출	불검출
무기성질소	171.680	25.660	F	2.270	3.130
T-P	2.928	1.728	색도	2602도	485도
총대장균군수	280개/mL	<30개/mL	페놀	0.429	0.044
CN	0.08	0.03	n-H 광유류	불검출	불검출
			n-H 동식물류	불검출	불검출
As	0.106	불검출	유기인	불검출	불검출
Pb	0.050	0.097	PCB	불검출	불검출
Cu	0.171	0.216	TCE	불검출	불검출
Cd	0.005	0.012	PCE	불검출	불검출
Fe	1.043	2.403	이하여백		

끝.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연구사 김덕희 지방환경연구사 10/26 이재호

협조자

시행 폐기물분석과-2048 (2007.10.26.) 접수 제천시환경사업소-15704 (2007.10.30.)

우 361-290 청주시 흥덕로 808(흥덕구 송정동 140-50) / http://here.cb21.net

전화 043) 220-5369 /전송 043) 220-5329 / rngml@cb21.net / 공개

[붙임 6]

□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1조 별표1

제11조(사용료)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구역은 하수관거 유지 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우수 또는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05. 7. 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구분은 별표 1-1에 의한다. 다만,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에 따라서 구분한다.

④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 1】 <개정 2003. 8. 18, 2005. 4. 1>

하수도사용요율표

구분 / 업종		사용요율		
		기본요금	사용구분(㎥/월)	㎥당단가(원)
가정용		1,300	11~30 이하	270
			31~50 이하	350
			51 이상	470
업무용		1,300	11~30 이하	270
			31~50 이하	400
			51 이상	510
영업용		2,600	11~30 이하	270
			31~50 이하	310
			51~100 이하	510
			101~500 이하	690
			501 이상	780
목탕용	1종		1~200 이하	270
			201~300 이하	350
	2종		301~500 이하	470
			501 이상	590
산업용				270

1.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되,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시 정 질 문 답 변 서

질 문 의 원 명	성 명 중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답 변 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제 목	가로·보안등 관리에 대하여?

질문요지

1. 현 시관내 가로·보안등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는?
   (유지관리비, 개·보수 등)
2. 노후 가로·보안등 누전 및 감전예방 대책은?

답변내용

○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입니다.

○ 항상 지역의 새로운 발전틀을 구축하시면서 도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연구 접근해 주시는 성명중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가로·보안등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질문하신 제천시관내 가로·보안등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 입니다.

○ 기본적으로 가로·보안등의 주된 목적은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 우리시 관내에 설치 되어 있는 가로·보안등 현황을 보면 총 10,316등으로 그중 도시가로등이 3,979등, 농촌 가로등이 3,515등, 시내보안등이 2,822등이며, 관리주체로는 도시가로등은 도시관리팀 에서, 농촌가로등과 동보안등은 관할 읍,면,동 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1년간 전기요금은 농

촌가로등을 제외한 가로·보안등 6,801등에 335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 시민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인 가로·보안등관리를 위하여 2007년 1월에 유지관리비 총예산 195백만원중 135백만원은 각 읍,면,동,에 배정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60백만원의 예산으로는 보수전문 시공업체(현재1개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 하여 전화와 인터넷민원 발생시, 즉시수선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경우 11월 현재 25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 개·보수 현황을 보면 시설노후로 인한 잦은 누전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 하기 위하여 시내일원 노후등 교체 3개소와 접지불량 시설물보수, 청풍문화재 단지와 의림지 주변의 노후선로 및 등 교체사업 등에 132백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시청앞 가로등 설치와 장락로즈웰아파트 진입도로, 제일고 및 내토중학교와, 왕미초등학교, 대원과학대학, 조명등에 20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로등 신설 사업을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 내년도에도 내구연한 경과로인한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가로등 교체 7개소에 194백만원의 사업비와 신규도로 개설지역과 아파트 시공업체가 개설한 후 우리시에 기부 체납한 진입도로 2개소(e편한세상아파트, 파라디아아파트,) 신설도로2개소(신백초등학교 ⇒ 신화예식장, 명지초등학교 ⇒ 산곡동 입구)대한 가로등 신설 사업비 234백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지속적인 가로·보안등에 대한 수시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밝은 가로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시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후가로·보안등 누전 및 감전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관내에 설치되어있는 가로·보안등은 일부 SUS(스텐) 및 주철가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로·보안등은 팔각대파 가로·보안등 이거나 통신전주 및 한전전주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 또한 내구년한이 경과되어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 형편상 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8년도에는 194백만원을 투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심한 지역의 노후가로등 또는 각종 누전으로 인한 가로등 미점등 구간과 감전사고 발생가능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보수 공사를 시행 하겠으며 년차적 으로 사업비를 투자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누전관련 정비업체는 문론 관련 장비조차 없는 현재의 문제점을 깊이 인정 하고, 누전 선로 탐지기를 구입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는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함께 제천시 가로등에 대한 총괄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해보면

○ 우리지역이 타지역대비 시내의 야간이 많이 어두운 상황입니다. 시내일원 야간조도 확보차원 에서 장기적으로 등기구를 고효율램프 (CDM)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에너지 절약(50%정도) 과 밝은 조도 확보가 가능한 개선책을 2008년부터 이행하 도록 하겠습니다.

○ 가로·보안등도 우리시 도시디자인 및 브랜드와 직결된다는 원칙하에 신설등 및 노후등 부터 우리시가 자체 설계한 특색있는 가로·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또한 도심 공원에 한방특화 도시와 어울리도록 가로·보안등 에도 건강 개념을 도입하여 밤시간 을 밝게 비쳐주는 발광(적외선등)빛 을 통해 기(氣)를 얻을수 있다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개발 하는 한편 2008년도에는 1개소 정도 시범공원을 지정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우리시 고유 가로보안등 모델화를 통해 개선하는등 시설이 기능면에 충실 하도록 하고 또한 도시디자인 측면에서도 아름다움과 지역성을 반영 정말 도시속에 작품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성명중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서

질 문 의 원	성 명 중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답 변 자	미래경영본부장 윤 종 섭
제 목	공공디자인 도시선포 및 사업시행에 대하여?

질문요지

○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필요성과 현실태 및 2008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답변내용

□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입니다.

□ 평소 지역의 성장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협조 지원해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디자인 도시선포 및 사업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하여**(왜, 도시 브랜드로써 공공디자인 개념이 접근 되는지?)

○ 기본적으로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필요성과 중요성 문제는 도시 브랜드와 직결 된다고 봅니다.

○ 21세기 도시는 세계시장을 무대로 유통되는 『상품』으로써 그 도시의 존재 가치가 평가되며 또한 그 도시의 정체성과 맥을 같이 했을 때 그 도시의 평가는 크게 절상 된다고 사료됩니다.

○ 결국, 브랜드가 높은 도시는 날개 돋친 듯이 잘 팔리고 그렇지 못한 도시는 진열장에 나와 보지도 못한 채 창고 속에 재고품처럼 박혀 있을 수 밖에 없는 냉엄한 현실로 이해 할 수 있겠습니다.

○ 참고적으로 기업의 경우는 국가별로 총 매출액 대비 디자인 투자비는 우리나라는 0.31%며 디자인의 최고 선진국인 영국은 3%를 유지하고 있는 등 「국력 = 디자인」라는 등식을 성립하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하여**(왜, 공공시설물까지 디자인 개념이 도입되는지?)

○ 디자인은 도시의 모습을 그저 예쁘게 꾸미는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본질적인 변화를 지향 한다고 사료됩니다.

○ 특히 공공디자인은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개성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행복한 공간을 창조하는 근본적인 작업이라 봅니다.

○ 따라서 21세기 제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써 『디자인』의 소중함을 깊이 인지하고 지난 민선 3기때부터 『꿈의도시, 제천』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 ① 도심 전선 지중화사업 ② 광고물 없는 거리 ③ 도시경관 조례제정 운용 ④ 한방영향평가제등 다양한 정책등으로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 리모델링화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도시 전체속에서 보면 극히 미흡한 걸음마 단계라고 봅니다.

○ 이제 제천만의 도시디자인도 지역의 정체성을 간직한 선에서 다시 한번 종합 연구발전의 과정을 거쳐 분야별로 현실 접목하도록 행정적인 관심과 재정적인 집중투자등 미래 제천의 성장 동력으로써 디자인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크게 접목 되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 . 최근의 공공디자인 관련 흐름과 움직임(국내의 동향 중심)

○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지난 10.17~10.20(4일간)동안 서울 COEX에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가 개최된 바 있으며, 정부중앙부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공기업, 공공시설 및 디자인관련 기업디자인 연구소등이 대거 참여하는등 국회와 정부가 함께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디자인 경쟁의 전쟁터 분위기)

○ 구체적으로 디자인 동향을 살펴보면

① 국회를 중심으로 「 공공디자인 문화포럼 」 정례화

② 각 지자체 중심으로(조직편제)

- 서울시 : 디자인 총괄본부장을 부시장, 부본부장 디자인 서울기획관, 도시경관담당관, 건축디자인담당관
- 경기도 : 공공디자인팀을 국장급,

※ 부산시(디자인센터),대구시(도시디자인팀),나주시(디자인팀), 울산시(도시미관팀),인천시(도시디자인팀)

- 기타 디자인팀을 만든 도시 : 안양, 포항, 구미, 김해, 목포, 김천, 과천, 나주, 시흥, 동해, 제주

③ 지역대학중심 산업자원부장관 산·학·연 클러스터사업으로 이행

※ 세명대 경우 '04부터 산자부 TIC사업으로 친환경 디자인센타(DICGE) 개설 운영중입니다.

□ 현재 우리시 중심 공공디자인 현상(현주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4년 '꿈의도시 제천만들기'로 이미 타자치단체보다 일찍 지중화사업, 차없는거리, 문화의 거리등으로 시범거리 지정 운영해왔으며

○ 또한 건축허가에도 디자인 가이드라인 심의를 더욱 강화하여 반드시 공공디자인이 기본이라는 것을 반영하여 도시 미관에도 공공디자인을 무시한 건축을 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세우고 엄격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 결국 우리시 공공디자인에 대한 실제적인 시책반영에 있어서는 극히 걸음마 단계라고 인정하면서 현재 국회 공공디자인 분과 주관(박찬숙 의원) '달리는 희망학교 프로그램'에 공직자 5명이 참가 (2박3일-2기) 공공디자인에 불을 지피는 작은 움직임이 있었으며 현재 건축팀을 중심으로 업무를 관장하면서 시정 모든 업무가 공공디자인과 연결되는 공공디자인 종합이행 로드맵을 짜면서 작은 것부터 이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향후 2008년도 디자인에 대하여

<1> 사업의 기본은 방향성입니다.

◆ 첫 번째 교육사업입니다.

- 공공디자인 관련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과 아울러 유명인사 초청 강연을 통한 마인드 교육을 시민+전직원 대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 또한 달리는 희망학교에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료케 한 후 홍보대사로 양성 지속적인 의식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현재는 5명)

◆ 두 번째 시스템 및 제도 개선입니다.

-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공공시설물은 디자인 심의를 통과해야 설치 또는 시공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 추진코자 합니다.
- 디자인 영향평가제를 이행하여 교량이나 벤치 하나를 놓더라도 디자인이 미달되면 될 때까지 그 시설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 시민참여입니다.

- 지방자치와 지역 거버넌스 문화의 기본은 시민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시민제안사업에 2억원을 투자하여 1~2곳 정도 선정된 제안사업을 가지고 새로운 도시환경시설 및 가로환경, 건축물 부대시설, 교통편의 시설등 생활주변의 모든 사업에 대해 보기 싫은 것은 보기 좋게 불편한 것을 편리하게, 지저분한 것은 깨끗하게 시민들의 삶에 질을 느끼도록 만들겠습니다.

<2> 방향성에 따른 2008년 구체 시범사업계획입니다.

○ 총 2억6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실질적인 도시디자인 시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공공디자인 위탁교육비	1천5백만원
- 공공디자인 건축선진사례 견학비	3천만원
- 공공디자인 초청 강사비	1백만원
- 공공디자인 시민 제안사업 시상비	1천5백만원
- 공공디자인 시민 제안사업비	2억원

□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 도시선포식을 공공디자인 종합대책작업**(Dream & Art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기완료)**완료 된 후 전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 공공디자인 선포식에 참여한 시민은 물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모든시민들이 **「제천의 모습은 공공디자인을 통하여」** 라는 인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디자인이야 말로 우리도시에 미래이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꿈의도시 제천만들기"의 연장선상(2단계)으로 공공디자인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우리시 경쟁력 요소로 구축하고

-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디자인 전국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좀 더 새로운 공공디자인물결이 시민운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과 시민의 삶을 설계하는 공공디자인!!!
책상머리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 기반한 시민의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이상 성명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